

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출자 : 정문섭 의원 외 2인

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04. 12.

발 의 자 : 정문섭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장단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9조)

나. ‘3분자유발언’을 ‘5분자유발언’으로 개정(안 제33조의2)

다. 군정질문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·일괄답변 병행가능과 군정질문 방법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세부규정 신설
(안 제66조2)

라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3조 등”을 “제71조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,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-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은 임기 만료 5일 이전에 차기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폐회선포는 회기가 끝나는 날 산회선포로 갈음한다.
- ⑥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55조제1항”을 “제6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2의 제목 “(3분자유발언)”을 “(5분자유발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의장은 본회의의 회의가 시작할 때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의장은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33조의2제2항 중 “3분자유발언”을 “5분 자유발언”으로, “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”를 “의원은 사전에 그 발언요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한다.

④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,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0조의 제목 “(본회의중 위원회 개최)”를 “(위원회 개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6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2(군정에 대한 질문) ① 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

전반이나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(이하 “군정 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 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(일괄질문·일괄답변의 경우 20분)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른 일괄질문·일괄답변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 되 보충질문은 해당질문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 및 질문요지와 답변 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질문 72시간전까지 (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.)군수에게 도착되도록 보내야 한다.

⑤군수는 제4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정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의원이 군정질문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시에는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자료 요구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⑦군정질문의 진행방법은 의장과 의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의장은

질문 순서를 질문전날까지 질문의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하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⑧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결여한 질문과 답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⑨기타 균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71조 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의장, 부의장의 임기)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.</p>	<p>제9조(의장, 부의장의 임기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,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</p>
<p>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</p>	<p>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은 임기 만료 5일 이전에 차기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야 한다.</p>

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
제12조(회기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

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33조의2(3분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

제12조(회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폐회선포는 회기가 끝나는 날 산회선포로 같음한다.

⑥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.
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 제63조제1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2(5분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의 회의가 시작할 때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

위하여 3분이내의 발언(이하 “3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

②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3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원과 협의 의장이 정한다.[본조신설 96·7·18]

<신 설>

제50조(본회의중 위원회 개최)
(생략)

<신 설>

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의장은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5분 자유발언-----
의원은 사전에 그 발언요지를 -----
-----.

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한다.

④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,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의 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0조(위원회 개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6조(군수 등의 출석요구) ①

~ ③ (생략)

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66조(군수 등의 출석요구) ①

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66조의2(군정에 대한 질문) ①

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이나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(이하 “군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(일괄질문·일괄답변의 경우 20분)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른 일괄질문·일괄답변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

로 구분하되 보충질문은 해당질문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 및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질문 72시간전까지 (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.)군수에게 도착되도록 보내야 한다.

⑤군수는 제4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정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의원이 군정질문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시에는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자료요구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출

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⑦군정질문의 진행방법은 의장과 의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의장은 질문 순서를 질문전날까지 질문의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하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⑧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결여한 질문과 답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⑨기타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.